

직업능력유공 포상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는 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정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분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포상개요

- (포상대상) 사업주, 근로자, 우수 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교원, HRD(자격)업무종사자
- (포상내용)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접수방법

- (접수기간) '16.4.26(화) ~ 5.13(금) (접수일자 기준)
- (접수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경제단체, 지역·산업별인자위(ISC)
 - 단 HRD(자격)업무 종사자의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진흥원, 광해관리공단, 자격검정원 등에서도 접수
-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국민추천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누구나 추천가능한 국민추천제를 시행, 접수·추천기관에 우편·전자우편·방문 접수 가능

포상대상별 접수처 및 제출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16년도 직업능력의 달 포상계획」(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포상관련 의문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8,7285) 또는 접수처에 문의하세요.(전화번호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고용노동부소개-조직안내"에서 확인)

* 붙임1: 직능유공 포상계획

- 붙임2: ①포상 신청서(공적사상, 이력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등 포함)
 ②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③「직업능력 유공자」국민추천서

I. 추진배경

- (목적) NCS·일학습병행제 확산 등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을 통하여 능력중심사회 구현 및 확산
- (경과) '97년부터 매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포상
 - '15년까지 총 1,976명*을 포상, '16년에는 총 110명 포상
 - * 훈장 87, 포장 106, 대통령표창 224, 총리표창 371, 장관표창 1,188
 - * 포상인원(장관표창 포함): '13년 97명 → '14년 97명 → '15년 97명 → '16년(안) 110명

II. '16년 포상계획

1 포상규모(안)

- 훈격별 : 총 110점 ('15년 97점)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 창	총 리 표 창	장 관 표 창
110	5	9	15	26	55

- 포상규모

분야별인원	훈격별 인원					
	합계	훈장	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
합 계	110	5	9	15	26	55
사업주	16	2	2	2	4	6
근로자	16	1	2	2	4	7
우수숙련기술인	12	1	2	3	4	2
직업훈련기관 대표	16	1	1	3	4	7
직업훈련교원	27	-	1	3	4	19
HRD(자격) 업무종사자	23	-	1	2	6	14

* 행자부 협의를 통해 포상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며 분야별 인원은 공적심사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 대상(분야)

- 사업주, 근로자, 우수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교원, HRD(자격)업무 종사자 등 총 6개 분야

□ 자격기준

〈1〉 사업주

- '16.4.25 현재, 사업체를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로서
 - 직업훈련 환경 조성 및 실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공이 있는 자 및 근로자의 숙련기술 장려 및 자격 취득 등 능력중심사회 구성에 공이 있는 자

〈2〉 근로자

- '16.4.25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서
 - 꾸준한 자기개발 노력과 현장에서의 기술·숙련기술연마를 통해 작업공정 개선 및 품질향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능력중심사회 구성에 공이 있는 자

〈3〉 우수 숙련기술인

- '16.4.25 현재,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 기술개발 및 전수, 교육훈련 및 사회기여를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성에 이바지 한 자

〈4〉 직업훈련기관 대표

- '16.4.25 현재, 직업훈련기관을 1년 이상 경영하고, 최근('15년, '14년도) 훈련기관 평가(고용부 실시)에서 A등급을 받은 민간 훈련기관 대표 또는 기업 내 훈련기관(사내)·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 등의 대표로서

-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기술·숙련기술인 양성 등 능력중심사회 구성에 공이 있는 자

〈5〉 직업훈련교원 (직업훈련기관 대표 제외)

- '16.4.25 현재,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기업 내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근로자를 가르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등 능력중심사회 구성에 탁월한 공이 있는 자

〈6〉 HRD(자격)업무종사자 (직업훈련기관 대표 및 교원 제외)

- '16.4.25 현재,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 민간훈련기관, 기업, 기업 내 교육훈련시설, 산업별단체, 국가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자격검정업무 수탁·연구기관 등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 NCS개발·보급, 자격제도 등 능력중심사회 구성에 공이 있는 자

□ 추천제한 대상(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 ① 재 포상 금지 기간 내의 자
- ②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③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⑥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⑦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⑧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2016년도 정부업무포상업무처리지침」 상 포상추천제외 대상 : 첨부 1

내 용	추진일정	담당기관(유관기관)
'16년도 포상계획 수립·시달 및 공고	4.25. (공고일)	고용부
포상계획 안내·홍보 및 신청서·추천서 접수	4.26.~5.13.	접수·추천기관
행자부 포상규모 협의	4.26~5.13.	고용부
현장조사 등 실시 후 추천기관에 신청자·피추천자 통보	~ 5.20.	접수기관→추천기관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5.31.	각 추천기관
고용부(본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6.3.	추천기관→본부
결격사유 등 각종조회결과 확인	~ 6.10.	고용부
포상후보자 선정	6.24.	고용부
- 공적정리 및 심사(직능국)	6.30.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고용부)	7월 초	
행정자치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7.15.	고용부
포상 실시(직업능력의달 기념식)	9.1.	고용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 상 포상추천 제한 대상

□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 포상기준의 예외

-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접검거)
-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추천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추천제한 자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가)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나)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분야별 접수 및 추천기관

대 상 \ 구 분	접 수 기 관	추천기관 (추천자)
사업주 근로자 우수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교원 HRD(자격)업무종사자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¹⁾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경제단체 ²⁾ 지역·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경제단체(대표) 지역·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HRD(자격)업무종사자	직업능력개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지역·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직업능력개발원(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사장) 지역·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국민추천제 실시

- 모든 포상 분야를 대상으로 국민추천제 실시,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포 상 신 청 서

신청분야 (반드시 체크)	①사업주	②근로자	③우수숙련기술인	
	④직업훈련기관대표	⑤직업훈련교원	⑥ HRD(자격) 업무종사자 (SC관련종사자 포함)	
인적사항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연령)	(만 세)
	주소		직위/직급	
	전화번호	(집) (H.P)	재직기간 (수공기간)	()
사업체현황 <훈련기관 현황>	사업체명 <기관명>		소재지	
	업종		설립연월일	
	주생산업종 <주훈련직종>	<재직자훈련, 실업자훈련 등으로 기재>	전화번호	
공적내용 요약	근로자수 (피보험자수)		FAX	
	※ 붙임 참조 ("공적사항" 서식에 의해 공적사항을 소재목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 신청인: (인) 추천인: (인) (※ 소속사업장추천인이 있는 경우 기재)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주 1) 지청별 취합하여 지방청 송부
 주 2)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공 적 사 항

1. 관련업무 수공기간 (신청자 공통기재사항)
 ○ 2011. 7. 20.~2014. 6. 5. △△회사 ○○부 □□업무
 ○ 2008. 2. 14.~2011. 7. 18 △△회사 ○○부 □□업무

※ 연도별 중사내역을 상세하게 기재

2. 주요 공적사항(분야별 아래의 각 항목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소제목
 ○ 내용

※ 사업주: ①수공기간 ②수공기간 중 근로자 훈련실적(최근 3년간 훈련 실적) ③근로자 능력개발 장려 실적(자체 근로자 훈련-자격제도 운영실적, NCS를 활용한 직무·능력중심채용, 보상체계 마련·운영 실적, 일학습병행제 참여 실적, 능력개발 장려실적(소속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훈련 투자 실적, 직업훈련계획 자체 수립·운영 여부, 사내 자격제도나 사내 경진대회 운영, 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배출 실적 등) ④기타 공적(NCS 기반의 훈련프로그램 유무, 각종 직업훈련 관련 협회 또는 위원회 등이 위원으로 참여 여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산·학·연 참여 실적(특성화고 교원 현장 연수) 등 기타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기여한 실적, 평판 등

※ 근로자: ①수공기간 ②품질향상 및 공정개선 실적, 최근 3년 이내 사내 또는 외부 제안반영 및 특허, 국제규격 획득, 전시회 및 각종 직업훈련 관련 대회 입상 실적 ③자기개발 실적(업무관련 교육훈련이수 및 자격증 취득 등) ④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기여한 실적(기술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훈련교사 활동 실적, NCS, 일학습병행제 등 직업훈련 관련 내·외부 활동사항 등), 평판 등

※ 우수숙련기술인: ①수공기간 ②숙련기술 보유정도 및 기여실적(자격, 각종 대회 입상, 기능한국인, 명장 등 선정 여부,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등록 및 국제규격(ISO)획득 건수, 제품개발 및 공정단축 등 개선내역 ③교육훈련실적(직무 관련 교육·훈련교재 개발 실적, 사내·외 기술지도 및 컨설팅 실적, 산업 현장교수단 등 고용부·인력공단 등의 숙련기술전수 프로그램 참여 실적, NCS 기반의 훈련프로그램 도입 또는 개발에 참여한 실적, 일학습병행제 참여 여부 ④사회 기여도(자격 검정, 기능경기대회 출제 또는 심사위원 활동 실적, 각종 직업훈련 단체 또는 위원회 등 참여 실적, 저술 및 논문 발표실적, 직업진로지도 및 사회봉사활동 실적, 기능인 지위향상 및 타기 능인 귀감도, 평판 등

※ 훈련기관대표: ①수공기간 ②훈련기관평가(최근 3년간(최근 3회) 평가등급> ③훈련실적(수료생 취업률, 재직자훈련 실적증가율) ④훈련인프라 투자 및 훈련프로그램개발 실적, NCS 훈련적용 과정 및 비율, 일학습병행제 참여 실적 ⑤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기여한 실적(각종 직업훈련 단체 또는 위원회 등 활동 실적 등), 평판 등

※ 직업훈련교원: ①수공기간 ②훈련기관 평가 결과(최근 3년간(최근 3회) 평가등급> ③직무 수행실적(교재·교육훈련매체·교수기법 개발 및 관련 연구논문 실적, 산업계 협력체계 구축 실적, 훈련생 취업지원 체계 구축 실적, 자기개발 실적(업무관련 교육훈련이수 및 자격증 취득), NCS 기반 훈련과정 개설·훈련 실적 등, ④기타 공적(NCS 개발·보완 실적,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 실적, 기타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기여한 실적

※ HRD업무종사자: ①수공기간 ②직무수행실적(직업능력개발 및 자격취득 활성화 기여 및 자격제도 등 직업훈련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한 실적, 직업훈련 내실화, 훈련생 자격취득, 취업지원 기여 실적, 대내외 제안반영실적, 각종 위원회, 심사위원 참여 실적, ③기타 능력중심사회 조성에 기여한 실적(대내외 직업훈련 활동사항, 자격 시험 위원 참여, 저술, 논문 발표 등)

3. 주요 수상경력
 ○ 2012년 △△부문 ○○대상 수상

※ 공적사항은 3~15page 이내로 제한(개조식)으로 구체적 정량·정성실적 기술
 ※ 공적인증서류 첨부(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이 력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집) (H.P)	e-mail		
경 력 사 항				
회사명	근무기간	부서명	직위명	담당업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 경력별 주요업무 및 기간을 상세히 작성

[붙임2-1-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 (군인)		
7) 구 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직자 <input type="checkbox"/> 정년퇴직 <input type="checkbox"/> 명예퇴직 <input type="checkbox"/> 의원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 . (년 월)
8) 일 반 직	. . . ~ . . . (년 월)	13) 교 원	. . . ~ . . . (년 월)
9) 별 정 직	. . . ~ . . . (년 월)	14) 군 인	. . . ~ . . . (년 월)
10) 기 능 직	. . . ~ . . . (년 월)	15) 군 무 원	. . . ~ . . . (년 월)
11) 고 용 직	. . . ~ . . . (년 월)	16)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㉑		년 월	

17) 제외기간	해당없음		
합 계 ㉒	해당없음		

18) 실 재직기간 (㉑ - ㉒)	년 월	19) 추천훈격	
----------------------	-----	----------	--

10) 징계, 형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장관급표창 이상기재)	포 상 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㉑	직 급	성 명	㉒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2-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인적사항

- 소 속:
- 주 소:
- 성 명:

동의내용

위 본인은 2016년 직업능력개발유공 포상과 관련하여,

-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붙임 2-3]

「직업능력 유공자」 국민 추천서

* 포상신청서 작성한 경우 국민추천서 작성 불필요

추천서 작성요령

추천분야:

추천인	추천제목			
	성명 (단체명)		피추천인과의 관계	
	주소	e-mail		
	전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대상)	성명		소속(직장)	
	직위		공적기간	
	주소			
	전화	(주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현 (~)		
공적내용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관련 사진, 언론보도 등)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공적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④ 제출처: 접수기관을 통한 우편·방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접수

* 전화문의: 044-202-7278, 044-202-7285

* 국민추천서는 우편·방문·이메일(csh2389@korea.kr) 신청 가능